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2016누47361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】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) 【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】마포세무서장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) 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16. 4. 22. 선고 2015구합69232 판결 【변론종결】2016. 12. 16.

【주문】

]

1.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6,477,580원의 부과처분 중 325,624,881원을 초과하는 부분,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45,434,740원의 부과처분 중 465,841,263원을 초과하는 부분,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2,598,980원의 부과처분 중 703,729,928원을 초과하는 부분,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8,239, 020원의 부과처분 중 494,306,186원을 초과하는 부분,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2, 832,040원의 부과처분 중 286,033,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- 2.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게 한 별지1 '이 사건 처분 내역'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가.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나.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-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- ① 제6면 제19행 이하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- "라) 원고는 또, 실행위자인 소외 1, 소외 2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, 이들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-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실행행위자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, 10, 11, 12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마) 원고는 또 실행행위자인 소외 1, 소외 2의 부정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, 선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.
-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9두3682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, 실행행위자는 원고의 직원들로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 있어 원고가 주의를 기울여 실행행위자의 업무를 감독하였다면 실행행위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아내어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, 단지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"

② 제11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.

"다.

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

- 1)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.
-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두 2330 판결 등 참조).
- 2) 이 사건 사업이 '통신업'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등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위에서 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, 한국표준산업분류 또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내용을 구 체화하는 세법규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,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밴 서비스업에 관하여 직 접적으로 업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, ② 밴 서비 스업은 밴사의 독자적인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거래승인 서비스와 자동이체 서비스, 자동매입 서비스, 전 자서명 서비스,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등과 전표매입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점,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・개정 및 그 에 관한 행정해석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인 통계청에서는 밴 서비스업의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,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서버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단말기 설치 및 호스팅서비 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정보서비스업 중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등 행정청에서도 밴 서비스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 업종 분류에 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피고 등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밴 서비스업이 '통신업'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'정보서비스업'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법인세를 과소신 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 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- 3) 취소되어야 하는 가산세액의 계산
- 취소되어야 할 가산세액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중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법인세액과 관련된 부분이다.
- 을 제19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산세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,639, 353원[= 156,393,535 × 10%], 납부불성실가산세75,213,346원, 합계 90,852,699원[= 15,639,353 + 75,213,346],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4,937,818원[= 149,378,187 × 10%], 납부불성실가산세 64,655,659원, 합계 79,593, 477원[= 14,937,818 + 64,655,659],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60,148,925원[= 601,489,256 × 10%], 납부불성실가산세 168,720,127원, 합계 228,869,052원[= 60,148,925 + 168,720,127원],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8,218,487원 [= 482,184,877 × 10%], 납부불성실가산세 85,714,347원, 합계 133,932,834원[= 48,218,487 + 85,714,347],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8,435,307원[= 284,353,079 × 10%], 납부불성실가산세 18,363,343원,합계 46,798,650원[= 28,435,307 + 18,363,343]이다.
- 따라서,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6,477,580원의 부과처분 중 325,624,881원[= 416,477,580 90,852,699]을 초과하는 부분,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45,434,740원의 부과처분 중 465,841,263원[= 545,434,740 79,593,477]을 초과하는 부분,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2,598,980원의 부과처분 중 703,729,928원[= 932,598, 980 228,869,052]을 초과하는 부분,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8,239,020원의 부과처분 중 494,306,186원[628,239,020 133,932,834]을 초과하는 부분,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2,832,040원의 부과처분 중 286,033,390원[= 332,832,040 46,798,650]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,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(별지 생략)

판사 김필곤(재판장) 손삼락 김용하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